

보 상 계 획 공 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탁 시행하는 심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29.

영 동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심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나. 위 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397-4

다. 공고방법 : 토지·물건조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에 비치 열람

라. 공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게시판, 영동군청게시판, 영동군청 홈페이지

리. 보상방법 : 협의완료 및 등기이전 후, 즉시 지급

2. 열람공고기간 : 2017. 9. 29(금). ~ 10.16.(월)

3.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지역개발부(☎043-730-2551,2561)

주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5. 보상시기 : 2017 ~ 사업준공일 이내(※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 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협의(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다. 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의서 작성 후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즉시 보상금 지급

7.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보상협의 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 공탁

- 나. 보상협의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지역개발부
-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1부,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2통, 통장사본 1부, 주거관련서류(주거이전비), 농지원부(농업손실보상) 등
- 라.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 마.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기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음.
- 나.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로써 갈음.
- 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
- 라.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로 문의. [전화번호 : 043-730-2555, 043-730-2561, FAX : 043-731-6105]